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위반 사례



목 차

I ▶ 들어가기에 앞서

II ▶ 현장점검 개요

III ▶ 개인정보 주요위반 사례



1. | 들어가기에 앞서

| 개인정보의 3대 난제

01 어느 법을 적용할지?

02 제3자 제공 VS 위탁

03 개인정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범위(용어정의)



1. | 들어가기에 앞서

제3자 제공 VS 업무 위탁

개인정보취급자

- 임직원, 파견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사 직원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Vs 제3자 제공

업무 위탁

- 제26조
- 배송업무 위탁, TM 위탁 등
- 정보주체가 사전 예측 가능 (정보주체의 신뢰 범위 내)
- **원칙** 위탁사실 공개
- **예외** 위탁사실 고지 후 별도 동의 획득(마케팅 업무 위탁)
- 위탁자 책임
- 위탁자 부담(사용자 책임)

관련조항

예시

예측 가능성

이전방법

관리 · 감독 책임

손해배상 책임

제3자 제공

- 제17조
- 사업제휴, 개인정보 판매 등
- 정보주체가 사전 예측 곤란 (정보주체의 신뢰 범위 밖)
- **원칙** 제공목적 등 고지 후 정보주체의 동의 획득
- 제공받는 자 책임
- 제공받는 자 부담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발 · 유지보수, 웹호스팅 서비스 제공 등도 업무 위탁

1. | 들어가기에 앞서

개인정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범위(용어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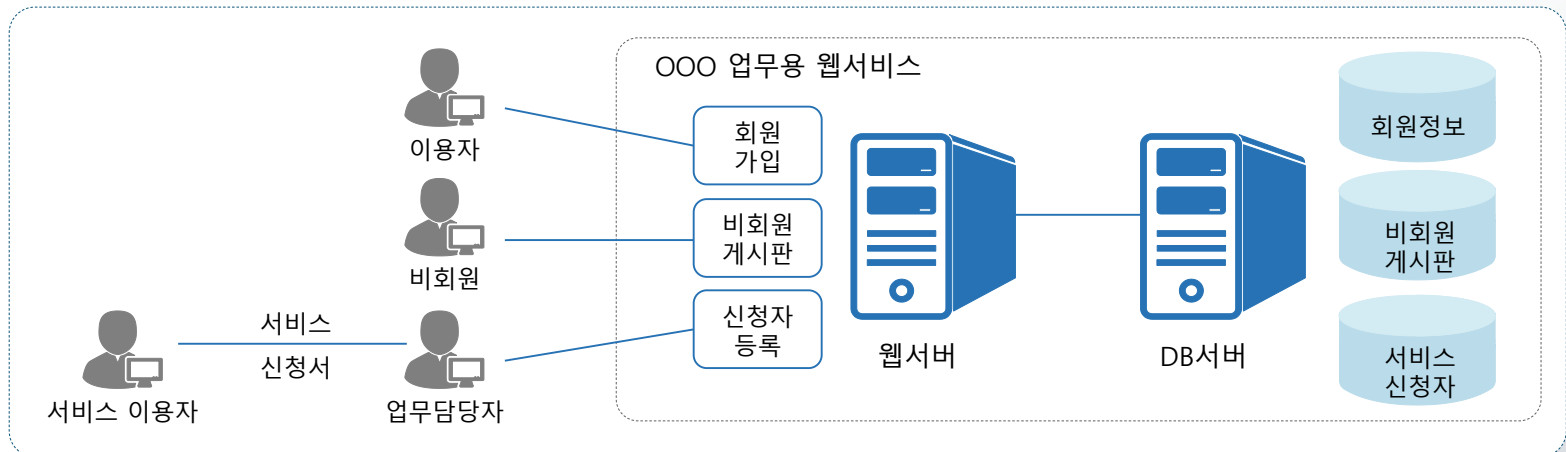
개인정보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



1. | 들어가기에 앞서

| 방통위·행자부가 행정처분(과태료)을 할 경우

1.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과 해당법(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분

※ 제6조(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 금액 차등

<방통위>

☐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 

[별표 9] <개정 2016. 9.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중략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23조제3항(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1호	1,000	2,000	3,000

<행자부>

☐ [별표 1]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제37조제1항제2호 관련)  

☐ [별표 1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0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6. 9. 2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

중략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법 제75조제1항제1호	1000	2000	4000

1. 들어가기에 앞서

(개인정보 처리근거)무엇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등을 할지?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할 수 있다. 이하 같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2. | 현장검사 개요

(현장검사 종류)검사 주기 및 성격에 따라 기획검사와 특별검사로 분류

기획검사

- 주요 7개 분야 및 해당 분야의 수탁자 대상 매달 20~30개소 점검

※ CCTV의 경우 2015년부터 기획검사 미실시(2014년까지 반기별 1회 실시)

※ 금융분야는 2015년부터 금감원에 수탁

* ① 공공, 비영리 협/단체 ② 교육 ③ 보건복지 ④ 방송통신/IT분야 ⑤ 산업·물류
⑥ 중개·임대·생활 ⑦ 시설·문화

특별검사

- 언론보도, 민원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검사 수행(상시)

2. | 현장검사 개요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제1항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 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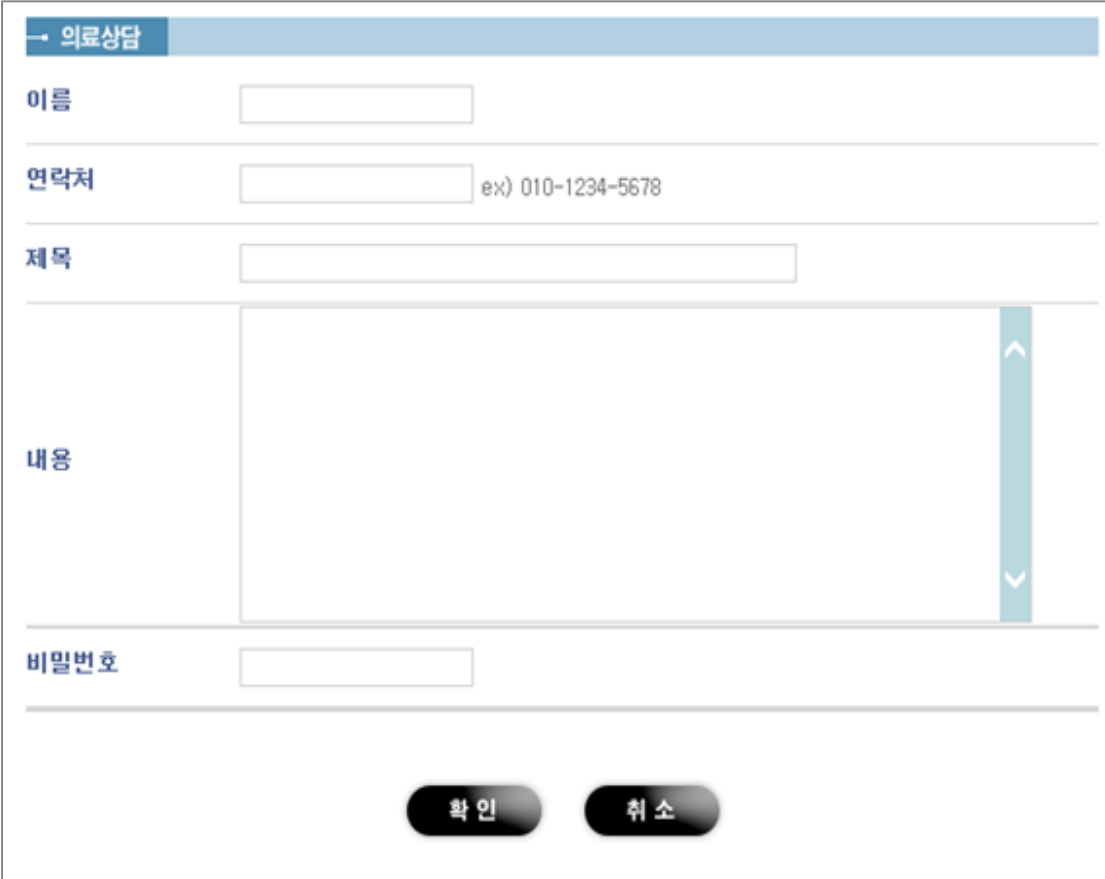
- 0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 0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 03 그 밖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0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제1항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 주요위반사례 (수집)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법령	위반사례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자료설명 법령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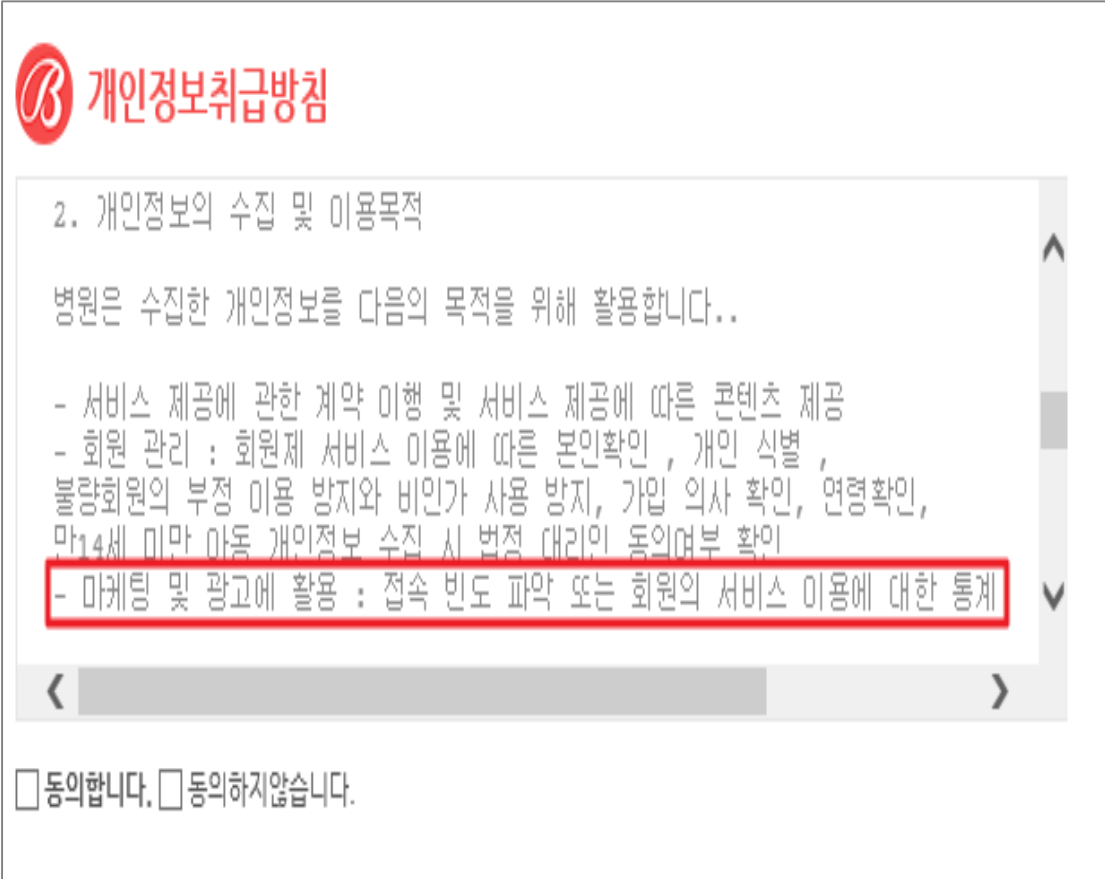
3. | 주요위반사례 (수집)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법령	위반사례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자료설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항목을 알리고 있지 않음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회사는 고객님께 더 향상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님의 사전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으며, 당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정보 :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시승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목적 완료 후 즉시 삭제 ☐ 본인은 본 동의서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3. | 주요위반사례 (수집)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법령	위반사례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자료설명 개인정보 처리 시 마케팅 및 광고활용에 대한 개별 동의를 받고 있지 않음)	

3. | 주요위반사례 (파기)

제21조 (개인정보 파기)

법령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반사례

SQLQuery1.sql - 114.31.55.150.megastudy (mega_dba (78)) - Microsoft SQL Server Management Studio

```
SQLQuery1.sql - 1...dy (mega_dba (78)) *
select top 10 *
from MB_Member with(nolock)
order by Reg_dt desc
```

	Code	SCode	uKind	uid	uPass2	uName	uJumin	uJumin_enc	uSex	uBirth	uBirth_kind	uShum	uEmail	uEmail_enc	
1	341954		1	ry	c95	709	0	NULL	NULL	1	19		NULL	Des	uBlh
2	341953		1	cl	323	305	25	NULL	NULL	2	19		NULL	6Tt	uCL4
3	341952		1	kl	246	9719	7	NULL	NULL	1	19		NULL	Mz	uK3
4	341951		1	cl	387	933	0	NULL	NULL	2	19		NULL	6Tt	uCL4
5	341950		1	al	337	c4	0	NULL	NULL	1	19		NULL	PO	uW6
6	341949	CD0036	1	rl	3ad	63	2	NULL	NULL	1	19		NULL	o5	u58v
7	341948	CD0036	3	w	12	169	94	2	2			NULL			
8	341947		1	al	320	456	2	NULL	NULL	2	19		NULL	nH	uMo
9	341946		1	rl	dc	6d3	2	NULL	NULL	2	19		NULL	9hp	uOffice
10	341945		1	sl	818	4de	2	NULL	NULL	2	19		NULL	1H	uCL4

결과 메시지

114.31.55.150(10.50 RTM) : mega_dba (78) : megastudy : 00:00:00 : 10개의 행

3

* 자료설명

홈페이지 회원탈퇴 시 일부 정보
미 파기

3. | 주요위반사례 (파기)

제21조 (개인정보 파기)

법령	위반사례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자료설명 개인정보 분리보관 미 실시	 홈서비스 소식 FAQ 온라인 주문 안내 원산지 정보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제 4 장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1)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 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됩니다. (단,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회원가입정보의 경우, 회원가입을 탈퇴하거나 회원에서 제명된 때 - 대금지급정보의 경우, 대금의 완제일 또는 채권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된 때 - 배송정보의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가 인도되거나 제공된 때 2) 위 개인정보 수집목적 달성 시 즉시파기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거래 관련 권리 의무 관계의 확인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일정기간 보유합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3) 고객님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거래정보 등을 고객님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웹사이트는 지체 없이 그 열람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4)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운영 합니다. ①개인정보 유효기간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저장, 관리하여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 가능한 기간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지정기간 만료 후에 해당 개인정보는 파기

3. | 주요위반사례 (파기)

제21조 (개인정보 파기)

법령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위반사례

개인정보 파기

deli_number	order_number	r_name	phone	reg_date
3934	LTA9-10000025051-07M-2011	김	010-	2011-07-19 09:15:21.553
3935	LTA9-10000025055-07M-2011	김	02-	2011-07-19 10:52:42.140
3936	LTA9-10000025061-07M-2011	최	010-	2011-07-19 10:44:12.070
3937	LTA9-10000025062-07M-2011	김	010-	2011-07-19 11:48:32.383
3938	LTA9-10000025065-07M-2011	김	010-	2011-07-19 13:52:21.177
3939	LTA9-10000025069-07M-2011	김	010-	2011-07-19 14:17:52.130
3940	LTA9-10000025079-07M-2011	김	051-	2011-07-19 21:05:24.917
3941	LTA9-10000025081-07M-2011	김	010-	2011-07-19 21:08:12.940
3942	LTA9-10000025076-07M-2011	김	010-	2011-07-19 21:49:41.447
3943	LTA9-10000025088-07M-2011	이	010-	2011-07-20 10:12:17.090

개인정보 분리보관 미 실시

deli_number	order_number	r_name	phone	reg_date
11949	LTA9-100000062248-07M-2016	이	010-	2016-07-15 10:14:46.230
11948	LTA9-100000062240-07M-2016	김	010-	2016-07-15 09:08:39.527
11947	LTA9-100000062237-07M-2016	김	010-	2016-07-14 18:02:42.943
11946	LTA9-100000062230-07M-2016	최	010-	2016-07-14 14:17:43.253
11945	LTA9-100000062228-07M-2016	이	010-	2016-07-14 13:03:50.337
11944	LTA9-100000062226-07M-2016	이	010-	2016-07-14 08:51:42.460
11943	LTA9-100000062223-07M-2016	김	010-	2016-07-13 23:52:24.070
11942	LTA9-100000062220-07M-2016	김	010-	2016-07-13 19:25:20.263
11941	LTA9-100000062214-07M-2016	김	010-	2016-07-13 17:13:10.933
11940	LTA9-100000062213-07M-2016	이	010-	2016-07-13 16:29:51.957

* 자료설명
개인정보 분리보관 미 실시

3. | 주요위반사례 (위탁)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법령	위반사례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자료설명 개인정보 위탁 시 개인정보 업무 위탁 내용을 알리지 않음	5.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는 민원사항 처리 등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 개인정보 위탁처리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tr><th colspan="2">수탁업체</th><th rowspan="2">개인정보의 보유기간</th></tr><tr><th>지역</th><th>업체명</th></tr><tr><td>인천</td><td>(주), (주), (주), (주)</td><td rowspan="3">회원탈퇴 시 혹은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td></tr><tr><td>부천, 안산, 시흥</td><td>(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td></tr><tr><td>안양, 광명, 군포, 의왕</td><td>(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td></tr></table>	수탁업체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지역	업체명	인천	(주), (주), (주), (주)	회원탈퇴 시 혹은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부천, 안산, 시흥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안양, 광명, 군포, 의왕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수탁업체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지역	업체명												
인천	(주), (주), (주), (주)	회원탈퇴 시 혹은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부천, 안산, 시흥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안양, 광명, 군포, 의왕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3. | 주요위반사례 (안전조치의무)

제29조 (안전조치 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법령	위반사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자료설명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미 포함)	개정 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후(2016.09.01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명시 ➤ 개정 후 내부관리계획에 내용 추가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2.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취급자의 역할과 책임 3. 취급자 교육 4. 접근권한 관리 5. 접근통제 6. 개인정보 암호화 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8. 악성프로그램 방지 9. 물리적 안전조치 10. 개인정보 보호조직 구성·운영 11. 유출사고 대응계획 수립·시행 12.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13.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 14.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의 관리·감독 15. 그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 주요위반사례 (안전조치의무)

제29조 (안전조치 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법령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위반사례

New 1 *

+

0102030405060708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se

f:

w:

o:

se

f:

wh

Script Output

Messages

Data Grid

Trace

DBMS Output

Query Viewer

Explain Plan

Script Output

Output

Grid 1

Environment

SEQ	MENU	CRUD	CRUD_CONTS	USER_ID	REG_DATE	IP	USER_NM	
719	2	U	ac	직원정보 수정 이름 변경(null	ad	01-6-16	21	adr
718	2	U	ac	직원정보 수정 이름 변경(null	ad	01-6-16	21	adr
676	2	U	ac	직원정보 수정 이름 변경(null	ad	11-5-16	21	adr
675	2	U	ac	직원정보 수정 이름 변경(null	ad	11-5-16	21	adr
674	2	U	ac	직원정보 수정 총괄관리자	ad	11-5-16	21	adr
673	2	U	ac	직원정보 수정 총괄관리자	ad	11-5-16	21	adr
672	2	U	ac	직원정보 수정 이름 변경(null	ad	11-5-16	21	adr
636	2	U	ac	직원정보 수정 이름 변경(null	ad	19-4-16	21	adr
606	2	U	ac	직원정보 수정 이름 변경(null	ad	29-3-16	21	adr
79	2	U	ac	직원정보 수정 이름 변경(adm	ad	25-6-15	21	adr
78	2	U	07	직원정보 수정 총괄관리자 ...	ad	24-6-15	21	adr
77	2	U	ac	직원정보 수정 총괄관리자 ...	ad	24-6-15	21	adr
64	2	U	ac	직원정보 수정 이름 변경(ad...	ad	24-6-15	21	adr
63	2	U	ac	직원정보 수정 이름 변경(ad...	ad	24-6-15	21	adr
62	2	U	ac	직원정보 수정 이름 변경(우...	ad	24-6-15	21	ad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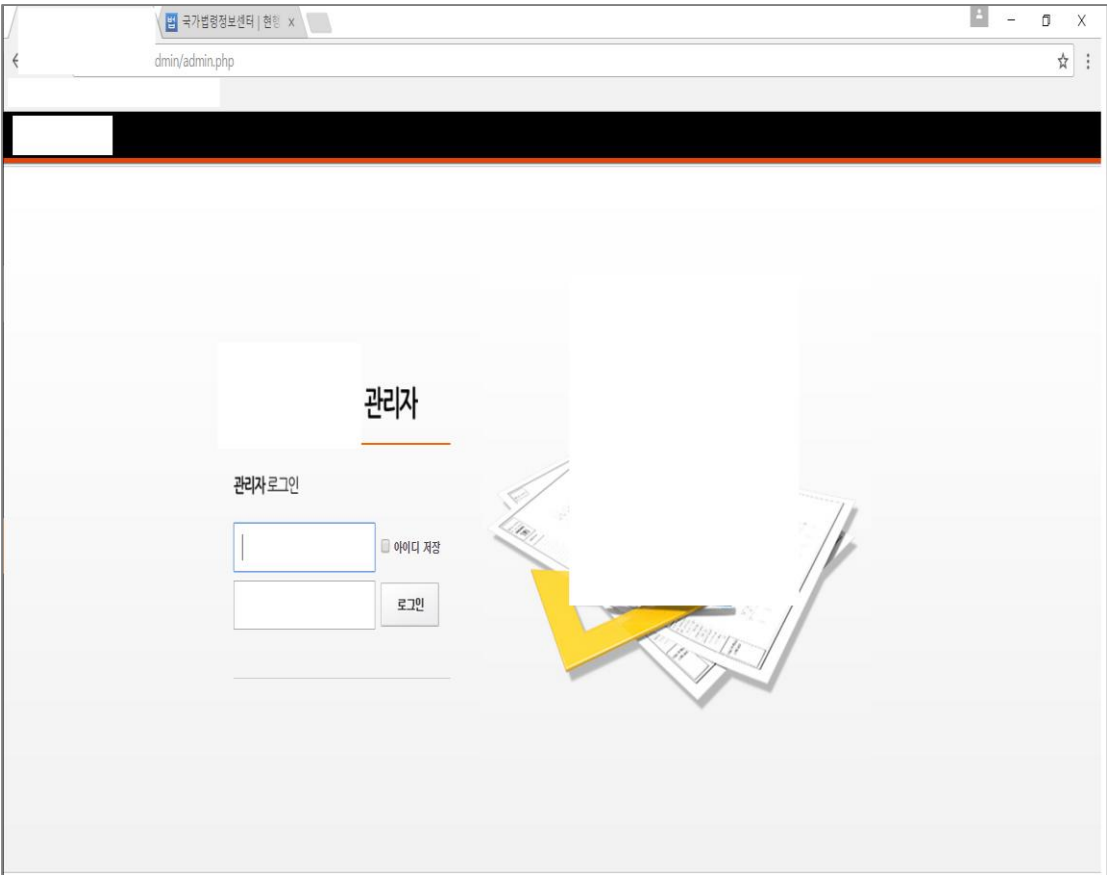
</

* 자료설명

2015.6.24일부터 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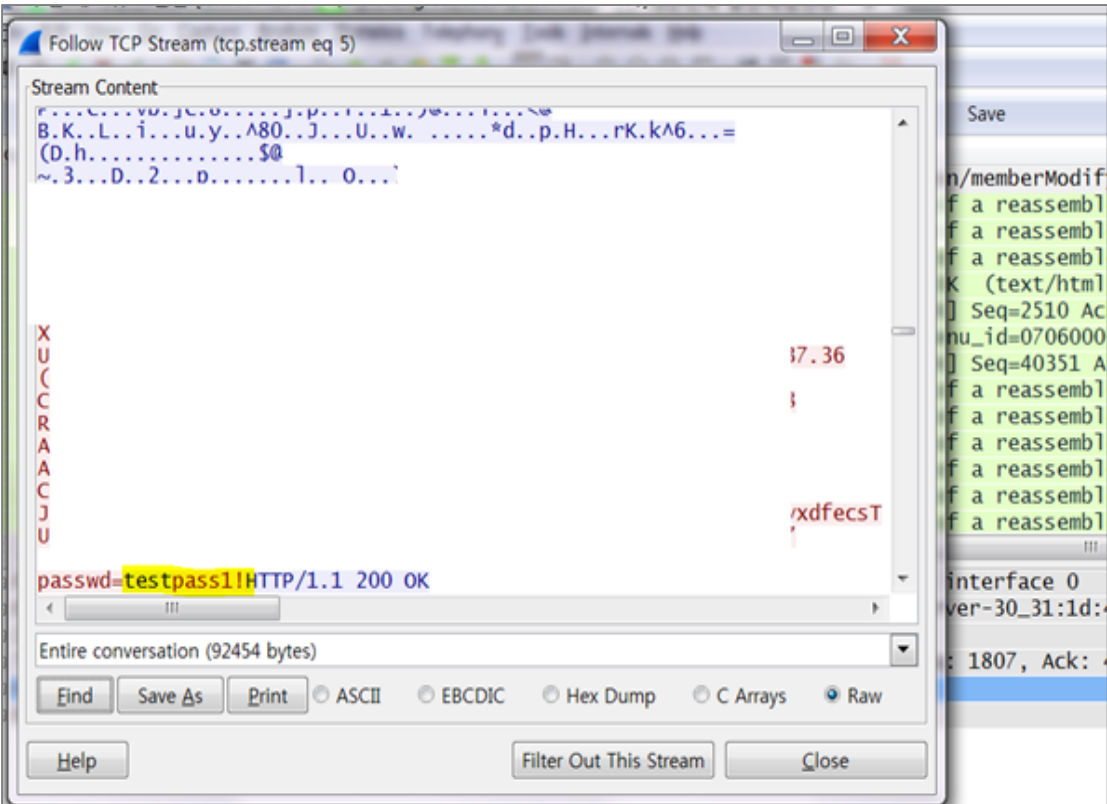
3. | 주요위반사례 (안전조치의무)

제29조 (안전조치 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법령	위반사례
제6조(접근통제)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 자료설명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VPN 또는 전용선 등을 사용하고 있지 않음	

3. | 주요위반사례 (안전조치의무)

제29조 (안전조치 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법령	위반사례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를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 자료설명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밀번호 송·수신 시 암호화 하지 않음	

3. | 주요위반사례 (안전조치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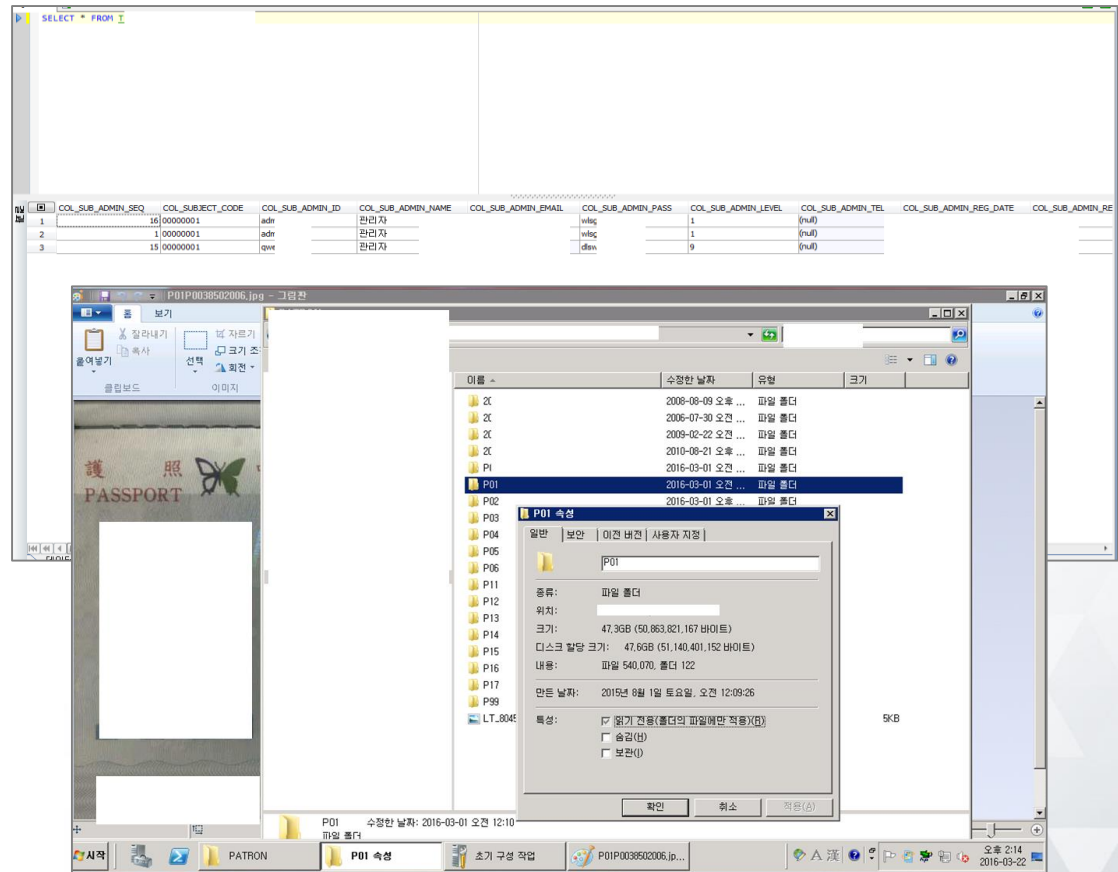
제29조 (안전조치 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법령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 되지 아니 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위반사례



* 자료설명

PW 평문저장/ 여권번호가 포함된 이미지 파일 미 암호화

7. | 주요위반사례

제29조 (안전조치 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법령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19.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계정, 접속일시, 접속자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접속”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 자료설명**
수행업무에 대한 접속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음

위반사례

관리자 아이디 체크

***입력/수정 DATA 설명**

N → 변경안함, Y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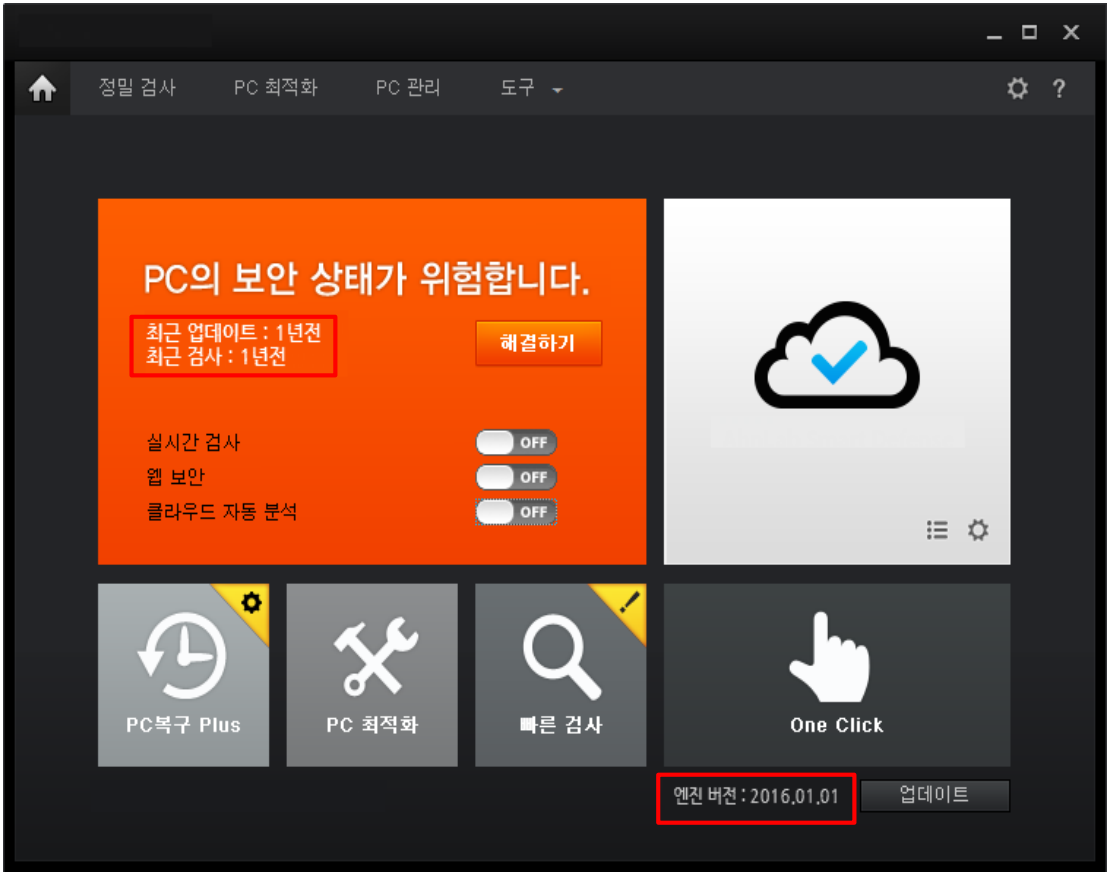
좌측 데이터부터 이름 | 이메일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폰 ex) YINININININ

아이디	이벤트	IP	시간	사용자ID	입력/수정 DATA
admin	login	192.	2016-11-21 13:20:10.0		
null	logout		2016-11-21 13:19:47.0		
admin	login	192.	2016-11-21 13:08:14.0		
qwerty	login	192.	2016-11-21 12:59:22.0		
qwerty	login	192.	2016-11-21 11:54:17.0		
qwerty	login	192.	2016-11-21 11:08:41.0		
qwerty	login	192.	2016-11-21 11:03:47.0		
qwerty	login	192.	2016-11-21 11:01:29.0		
admin	login	192.	2016-11-21 10:39:04.0		
qwerty	login	192.	2016-11-21 10:28:22.0		
qwerty	login	192.	2016-11-21 10:27:28.0		
qwerty	login	192.	2016-11-21 10:21:25.0		
qwerty	login	192.	2016-11-21 10:21:03.0		
qwerty	login	192.	2016-11-21 10:17:48.0		
qwerty	login	192.	2016-11-21 10:01:16.0		
qwerty	login	192.	2016-11-21 09:59:19.0		
qwerty	login	192.	2016-11-21 09:58:19.0		
qwerty	login	192.	2016-11-21 09:46:19.0		
admin2	logout	125.1:	2016-11-21 09:44:10.0		
admin2	login	125.1:	2016-11-21 09:43:32.0		

[1](#) [2](#) [3](#) [4](#) [5](#) [6](#) [7](#) [8](#) [9](#) [10](#) [Next] [957](#)

3. | 주요위반사례 (안전조치의무)

제29조 (안전조치 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법령	위반사례
제9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2.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3.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 등 대응 조치 * 자료설명 백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미 실시	

3. | 주요위반사례 (안전조치의무)

제29조 (안전조치 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법령	위반사례
제11조(물리적 안전조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 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자료설명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를 책상위에 보관하고 있음	

3. | 주요위반사례 (안전조치의무)

위반사례 필요

제29조 (안전조치 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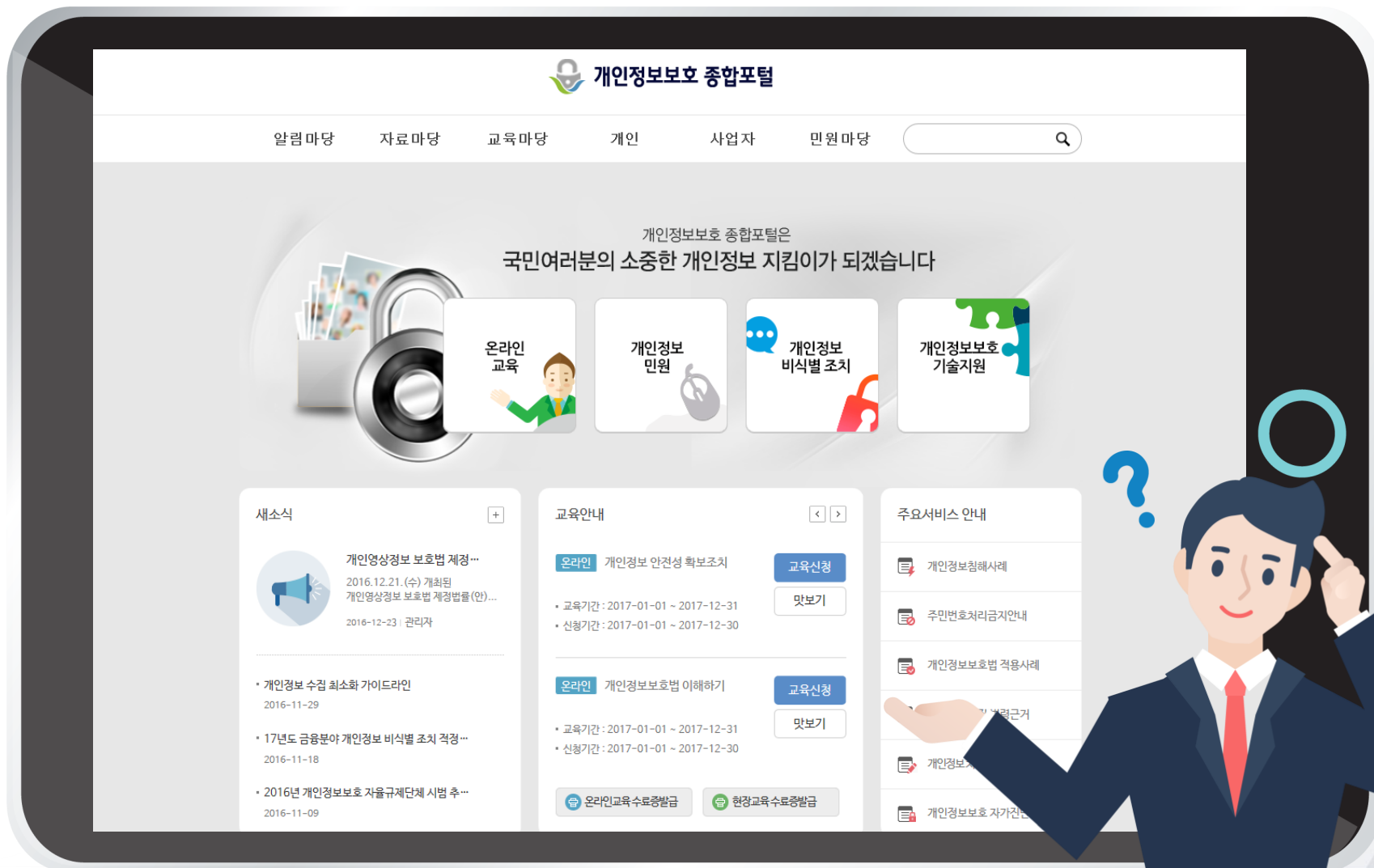
법령	위반사례
제12조(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별표]의 유형1 및 유형2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자료설명 재해재난 대비 위기대응 절차 미 수립	개정 전 없음 개정 후(2016.08.31 시행) ① 재해재난 대비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 수립 및 정기 점검 ②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 수립 ③ 유형 1,2 : 제1항, 제2항 예외  유형3(강화) 1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 단체

3. | 주요위반사례 (유출)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법령	위반사례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자료설명 개인정보 불완전 통지	 Question 10만명 개인정보 유출된 상황 개인정보처리자 A 연락가능한 개인정보 항목 1. 핸드폰번호, 2. 이메일주소 1차 유출통지 : 이메일주소를 통해 메일발송 (10만명중 4만건은 반송) 2차 유출통지 : 핸드폰번호를 통해 SMS 발송 (4만명 중 2만건은 반송) 개인정보처리자 B 연락가능한 개인정보 항목 1. 핸드폰번호, 2. 이메일주소, 3.집주소 1차 유출통지 : 이메일주소를 통해 메일 발송 (10만명중 4만건은 반송) 2차 유출통지 : 핸드폰번호를 통해 SMS 발송 (4만명 중 2만건은 반송) Answer  A는 유출 통지 의무를 완료했다고 보여지나, B는 2만명에 대해 유출통지하지 않음(집주소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참고사이트(행자부) – www.privacy.go.kr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알림마당 자료마당 교육마당 개인 사업자 민원마당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은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온라인 교육 **개인정보 민원**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새소식

-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
2016.12.21. (수) 개최된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
- 2016-12-23 | 관리자
-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
2016-11-29
- 17년도 금융분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걱정...
2016-11-18
- 2016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시범 추...
2016-11-09

교육안내

온라인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교육기간: 2017-01-01 ~ 2017-12-31
신청기간: 2017-01-01 ~ 2017-12-30

교육신청 **맞보기**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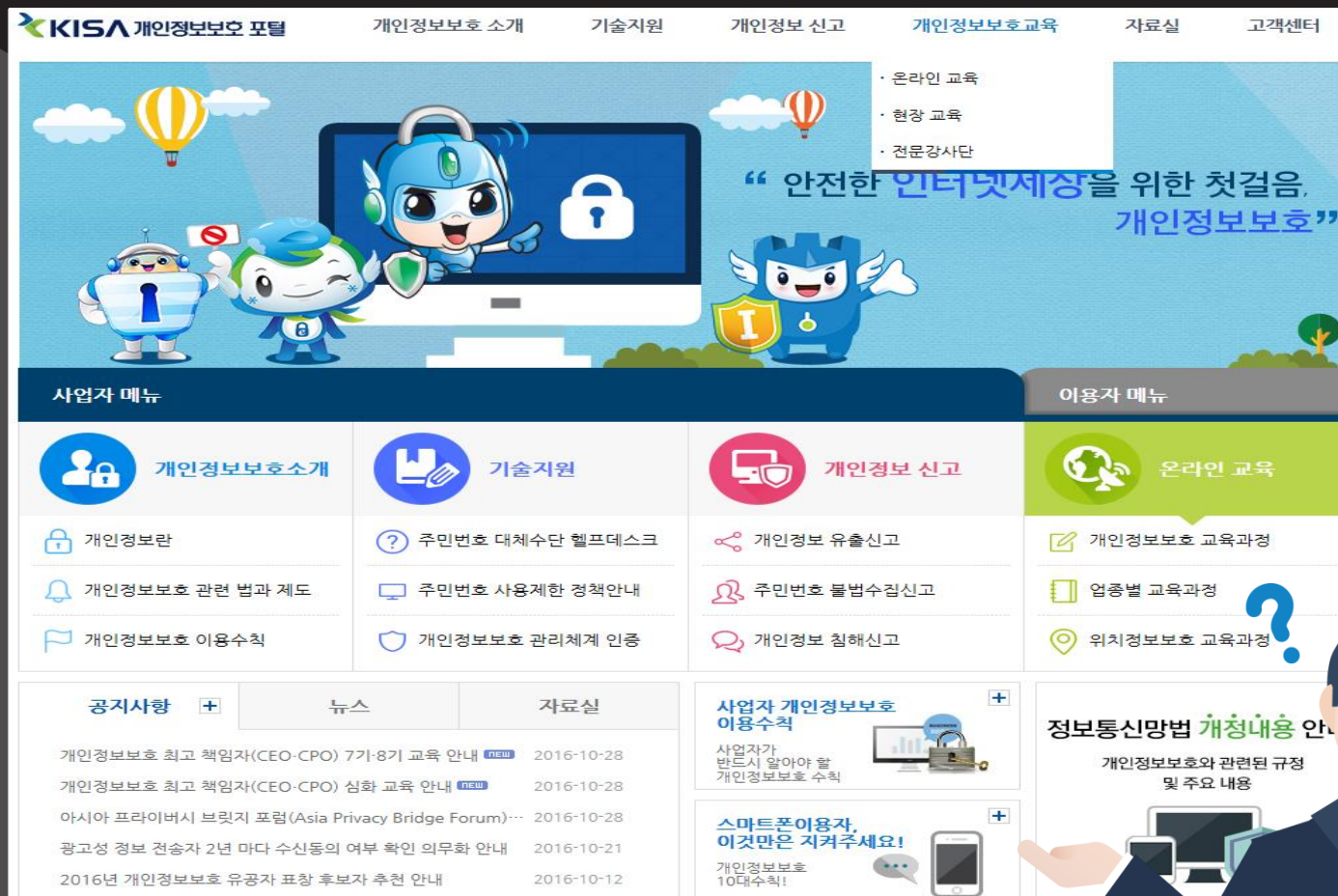
교육기간: 2017-01-01 ~ 2017-12-31
신청기간: 2017-01-01 ~ 2017-12-30

교육신청 **맞보기**

주요서비스 안내

- 개인정보침해사례
- 주민번호처리금지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사례
-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처리방침

참고사이트(방통위) – www.i-privacy.kr



The screenshot shows the KISA i-privacy.kr website. The header includes the KISA logo and navigation links: 개인정보보호 포털, 개인정보보호 소개, 기술지원, 개인정보 신고, 개인정보보호교육, 자료실, and 고객센터. The main banner features cartoon characters and the text: "안전한 인터넷세상을 위한 첫걸음, 개인정보보호". Below the banner, there are two main sections: "사업자 메뉴" (Business Menu) and "이용자 메뉴" (User Menu). The "사업자 메뉴" section includes links for 개인정보보호소개, 기술지원, 개인정보 신고, and 개인정보 유출신고. The "이용자 메뉴" section includes links for 온라인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 업종별 교육과정, and 위치정보보호 교육과정. At the bottom, there is a "공지사항" (Notice) section with a table of recent notices, a "뉴스" (News) section, and a "자료실" (Resource Room) section. The "공지사항" table lists notices about CEO-CPO education, Asia Privacy Bridge Forum, and 2016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wards. The "뉴스" section lists news about CEO-CPO education and the Asia Privacy Bridge Forum. The "자료실" section lists resources for busines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smartphone users.

공지사항	뉴스	자료실
개인정보보호 최고 책임자(CEO-CPO) 7기-8기 교육 안내	2016-10-28	
개인정보보호 최고 책임자(CEO-CPO) 심화 교육 안내	2016-10-28	
아시아 프라이버시 브릿지 포럼(Asia Privacy Bridge Forum)...	2016-10-28	
광고성 정보 전송자 2년 마다 수신동의 여부 확인 의무화 안내	2016-10-21	
2016년 개인정보보호 유공자 표창 후보자 추천 안내	2016-10-12	